## 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586호

「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4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

#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 1. 개정이유

주택도시기금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연직 직위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험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수 없도록 규정(안 제20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)
- 나.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연직 직위 명칭 변경 및 단순 오기 사항 반영(안 제20조 제4항 및 제23조제4항, 제24조, 제27조)

#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(주택기금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- E mail: djpaek@korea.kr, jeongmin89@korea.kr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 go.kr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(전화 044-201-3344, 33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